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95-4
번호	

제출년월일 : 1995. 2.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세무과)

1. 제안이유

-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세조례를 개정하여 '95년도 지방세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제9조의2, 제184조 및 제188조
-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3. 주요골자

-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 추가(안 제4조)
-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지방세법 제5장의 규정에 적용토록 하고 구관 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과 중과대상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며 증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안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 재산세의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 제5장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29조)
- 사업소세의 재산할 납기를 삭제하고 비과세 감면적용자 신고사항을 법 제5장의 규정으로 변경(안 제33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 2"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을 "법 제184조 및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법 제245조의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u>제9조의</u>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따로 정한다.</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u>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4(생 략)</p> <p>5. <u>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u></p> <p>6. <u>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u></p> <p>7. <u>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u></p> <p>제19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u>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u></p> <p>1. ~4 (생 략)</p> <p>②(생 략)</p>	<p>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p> <p>.....<u>제9조 및 제9조의2</u></p> <p>.....</p> <p>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184조 및 제5장</u></p> <p>.....</p> <p>.....</p> <p>1. ~4(현행과 같음)</p> <p><삭 제></p> <p>5.</p> <p>6.</p> <p>.....</p> <p>제19조(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u>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p> <p>.....</p> <p>1. ~4(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제22조(중과대상지역) <u>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u></p>	<p>제22조(중과대상지역) <u>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u></p>
<p>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류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5(생략)</p>	<p><삭 제></p>
<p>제28조(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u>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u></p> <p>1~4(생략)</p>	<p>제28조(구관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u>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p> <p>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p>①(생략)</p> <p>1~3(생략)</p> <p>②<u>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u></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p>①(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②<u>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u></p>

현행	개정 (안)
<p>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p>
<p>제31조(납기) ①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5장.....</p>
<p>1~6(생략)</p>	<p>1~6(현행과 같음)</p>